

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표

구 분	내 용	근 거	점검 결과 (양호, 부실 등 기재)
설치검사	2008.1.26.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, 2008.1.27. 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수검	법 제12조 제1항	
정기시설검사	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	법 제12조 제2항	
합격의 표시	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	법 제12조 제4항	
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 금지	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	법 제13조 제1항	
	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	법 제13조 제2항	
안전점검	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	법 제15조 제1항	
안전진단 신청(필요시)	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	법 제15조 제3항	
놀이시설의 이용 금지, 폐쇄, 철거	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·폐쇄·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	법 제16조 제5항	
점검결과의 기록·보관	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·보관	법 제17조 제1항	
안전교육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,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.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	법 제20조	
보험가입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	법 제21조	
중대사고발생 보고(발생시)	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	법 제22조 제1항	
보고, 검사, 답변	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·보고 및 답변	법 제23조	

점검자 :	소속	직	성명	인(서 명)
확인자 :	소속	직	성명	인(서 명)